사단법인 인본사회연구소 정관

2010. 12. 1. (제정)
2011. 4. 16. (개정)
2011. 12. 7. (개정)
2013. 2. 25.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인본사회연구소"**라고 한다.

제 2 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단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경우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법인은 한국사회에서 사람중심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담론의 연구·개발 및 사회적 공론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및 활동)

법인은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과 활동을 한다.

1. 인간중심의 철학과 원리를 체계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 활동
2. 입법 청원, 법률 개선안 제안, 지방자치단체 조례안 제안, 행정모니터 등 국회 및 지방의회의 법령 제·개정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3. 정책의 검토·평가를 통한 정책 개선안 제시 및 법령의 제·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는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활동
4. 국회·지방자치단체, 정당,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협력 및 교류
5.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용역·출판·수익사업 및 사회봉사활동 등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과 구분)

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고, 법인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과 단체로 하며 정회원, 준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법인이 정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준수하는 회원을 말한다.
2. 준회원은 법인의 각종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을 말한다.
3. 후원회원은 법인의 재정을 지원하는 회원을 말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 및 연구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정관의 준수 및 회비 납부 등의 의무를 가진다.

③ 준회원과 후원회원은 법인이 발간하는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으며, 희망에 따라 법인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7 조 (입회와 탈퇴)

① 회원의 가입은 법인에 서면 혹은 전자우편, 구두 등을 통해 가입의사를 밝히고 소정의 과정을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회원의 탈퇴는 법인에 서면 혹은 전자우편, 구두 등을 통해 탈퇴의사를 밝힘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 8 조 (포상과 징계 등)

① 회원이 법인의 발전을 위해 공로가 큰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정관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총 회

제 9 조 (총회의 기능)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
3. 법인의 해산 및 합병
4.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보고

제 10 조 (총회의 구성과 소집)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며 그 시기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④ 임시총회는 회원 1/3이상의 요청이나 이사회의 의결 혹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⑤ 총회는 개최 7일 이전에 의안,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⑥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한다. 단, 이사장이 부득이하게 총회를 주재하지 못하는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참석한 이사들의 의결로 총회의 의장을 결정한다.

제 11 조 (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② 총회에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서면 등의 방법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 4 장 임 원

제 12 조 (임원의 구성)

① 이사장 1인을 둔다.
② 이사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2인 이내로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하며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로 임명한다. 단, 결원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임원변경이 있을 때에는 임원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4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5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16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 및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나 다른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사직여부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7 조 (이사장과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총회와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다.

제 18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항의 보고를 위해 필요시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 5 장 이 사 회

제 19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기능을 수행한다.

1. 이사장의 선출
2. 고문, 정책자문위원, 기획위원, 운영위원(장) 임면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4. 법인 재산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정관 시행에 필요한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8. 기본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관련 사항
9. 총회의 위임 사항 및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기타 법인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 20 조 (이사회의 소집과 회의)

① 정기 이사회는 이사장이 1년에 1회 이상 소집한다.

②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만약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시이사회를 요구한 이사 중 최연장자의 명의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단, 이사장이 부득이하게 이사회를 주재

하지 못하는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참석한 이사들의 의결로 이사회의 의장을 결정한다.

④ 이사회는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1 조 (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제 22 조 (이사의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에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23 조 (회의록)

① 이사회 개최 시 일시, 참석자, 토의 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회의록에는 이사장,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및 감사가 서명, 날인한다.

제 6 장 기구 및 지원 조직

제 24 조 (고문, 정책자문위원, 기획위원)

① 법인에 고문, 정책자문위원, 기획위원을 둘 수 있다.

제 25 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이사회에서 임면한다.

③ 고문, 정책자문회의, 기획위원, 운영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일상적 사업을 심의·의결한다.

제 26 조 (특별위원회 등의 설치)

① 법인의 사업 중 한시적으로 특별히 수행되어야 할 사업이 있게 된 경우에

는 이사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아닌 자라 할지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특별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 등의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한다.

제 27 조 (사무처)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⑤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자금과 자산의 관리운영 업무
2. 회원의 가입 및 탈퇴관리와 회원증 및 인증서 발행 등 제반 행정업무
3. 총회 및 이사회 등 각종 행사 개최와 이에 따른 제반 업무
4. 대내외 홍보 및 본회의 기록 보존
5. 회원과 임원 간 연락업무 및 위원회 등 각종 기구의 지원 및 결정된 사항의 시행
6. 본 법인의 기구조직에 대한 관리, 지원 및 감독
7. 기타 사무와 관련된 업무

제 28 조 (부속기구)

① 법인의 중요한 사업 수행을 위해 별도의 기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부속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부속기구의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한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 29 조 (재 원)

법인의 재원은 회비,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30 조 (재산의 구성 및 종류)

①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출연금품 및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 31 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자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이사장이 관리한다.

② 수익금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간 수익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 32 조 (예산과 결산)

① 연도별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②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결 후 1개월 내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33 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4 조 (정관의 변경)

정관의 개정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5 조 (법인의 해산)

법인은 민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제 36 조 (잔여재산의 귀속)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부 칙

제 1 조 (정관의 효력발생)

이 정관은 법인 설립 허가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경과규정)

① 이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행한 법인설립준비행위는 법인이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운영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사단법인 인본사회연구소 조직도